

# 미국·캐나다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기준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국제기준(ISPM No.15)이 채택되고 캐나다, 미국 등이 국제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 검역을 200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캐나다의 새로운 규정이 전면 시행될 경우에는 소독 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소독처리마크를 각 목재포장재에 찍어야 합니다. 목재포장재 업체 및 해당국 수출업체는 이러한 목재포장재 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XX-000

YY

캐나다

수입요건

- 국제기준(ISPM No.15)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열처리, MB훈증)처리되어야 하며,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이 승인한 공식적인 마크 또는 로고가 각각의 포장재에 찍혀야 함.
- 새로운 목재포장재 수입요건이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 새로운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 처리된 목재포장재는 소독처리마크 표지 또는 위생증면서 발급 가능함.
- MB훈증소독의 경우 2004. 1. 2.부터 11°C 이상에서 처리된 것만 인정됨
- 동절기에는 가온하여 MB훈증소독하거나 또는 열처리(56°C 30분)하여 수출해야 함.

미국

수입요건

- 국제기준(ISPM No.15)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열처리, MB훈증)처리되어야 하며, 소독처리 마크가 포장재에 찍혀야 함.
- 미국은 새로운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미국의 소독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소독처리된 것이나 개정 시행될 소독처리 기준으로 소독처리된 경우 현재와 같이 소독사항이 부기된 위생증명서 발급 가능함.
- 미국은 현행 소독처리기준과 새로운 소독처리규정 모두 인정됨
- MB훈증소독의 경우 4.5°C 이상에서 처리된 것도 인정

## <미국·캐나다 목재포장재의 신·구 MB훈증 소독처리기준 비교>

### 1. 현행 MB훈증 소독처리기준

온도	약량(g/m <sup>3</sup> )	시간별 최저가스농도(g)			
		30분	2시간	4시간	16시간
21°C 이상	48	36	36	27	25
4.5~21°C	80	60	60	46	42

### 2. 2004. 1. 2.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목재포장재 MB훈증 소독처리기준

온도	약량(g/m <sup>3</sup> )	최소 농도(g/m <sup>3</sup> )			
		30분	2시간	4시간	16시간
21°C 이상	48	36	24	17	14
16°C 이상	56	46	28	20	17
11°C	64	48	32	22	19